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솔브레인은 본 규범을 준수합니다.

솔브레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한길

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솔브레인(주)(이하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를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Pool)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본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전자매체(당사 홈페이지, SRM 사이트 이하 같음)에 20일 이상 공개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최소 1주일 전 해당 협력업체에 공지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해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2.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 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1) 협력업체 선정 시,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등록) 할 수 있다.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2) 협력업체 선정 시,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한 선정(등록)으로 볼 수 있다.

-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 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4.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 등록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신규 거래 등록 기준)

자재의 신규 개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1.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2. 개발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3. 물량 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5. 분사, 합병 등으로 기존 업체가 존재하면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제5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1)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 ① 품질 및 납기, 가격,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② 공급 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 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④ 부도, 채권압류, 휴업, 만성 노사분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 ⑤ 비밀정보 유출,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⑥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2)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단,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 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재등록 절차)

거래취소 업체를 재등록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의 승인 하에 거래 재개 할 수 있다. 재등록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 재개에 있어 제한을 두어선 안된다.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